

## 「한국안경산업고도화육성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」

# 2023년 수출 기초역량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
한국안경의 수출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해 「2023년 수출 기초역량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안경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3월 10일

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

### 1. 사업개요

사업명 : 수출 기초역량 지원사업

사업기간 : 2023. 03. ~ 11. [9개월 정도]

사업목적 : 글로벌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수출 기초 역량 강화

지원규모 : 20개사 내외

※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변경 및 추가사업  
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([www.koia.or.kr](http://www.koia.or.kr)), 아이웨어포털([www.eyewearportal.or.kr](http://www.eyewearportal.or.kr))을 통해 공지

지원예산 : 선정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직접지원

※ 기업별 선(先) 집행(비용완납), 후(後) 지원금 지급(기업 선집행금 범위 내에서 지원)

※ 참여기업 부담 10% 이상 필수 / 부가세, 각종 수수료 등은 참여기업 전액 부담

지원대상 : 국내 소재 안경 브랜드 보유 안경기업

○ 안경기업 : 사업자등록증 상 「안경」 및 안광학 산업군에 포함된 종목 명기

※ 품목 : 안경테, 선글라스, 안경 악세서리 등

○ 안경 브랜드 보유 기업(아래 2개 조건 중 1개 조건 부합 필수)

1) 자체 안경 브랜드 상표권 보유

2) 안경 브랜드의 국내 독점 상표권, 유통권 보유

※ 단, 한국안경산업고도화육성사업 글로벌안경브랜드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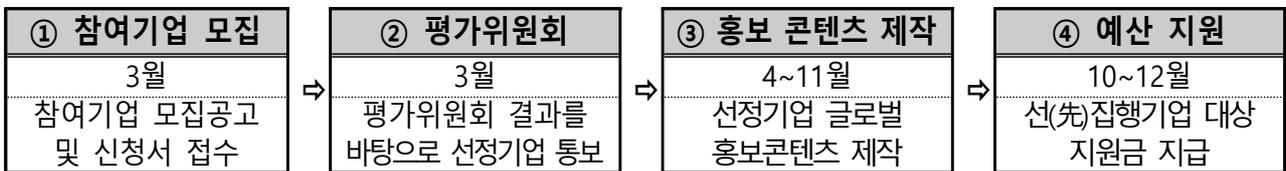
## 2. 지원내용

구 분	수출기초역량지원
지원형태	수출 초기단계 기업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기초 지원을 통한 시장진출 기반 마련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원가능 범위 : 수출 컨설팅, 수출용 홍보물(브로슈어, 영상 등) 또는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지원(영문 상세페이지 제작 등), 통번역 지원 등</li> <li>※ 선정기업 확정 후, 상기 범위 외 홍보 콘텐츠 제작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수</li> </ul>

※ 세부 내용은 기관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3. 신청안내

### □ 절차안내



### □ 신청안내

○ 신청기간 : 2023. 03. 10. ~ 03. 26. 18:00까지

1) 우편제출 : 03. 24.(금) 18:00 까지 도착 우편물에 한함

※ 주소 : (41494)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 7층 전략연구팀

2) 메일제출 : 03. 26.(일) 18:00 까지 도착 메일에 한함

○ 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기간 내 하기 서류 이메일 제출

※ 서류 제출 : 전략연구팀 문소영 사원([msy@koia.or.kr](mailto:msy@koia.or.kr))

연번	신청서류	비 고
1	2023년 수출 기초역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	서식 1
2	2023년 수출 기초역량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※ 선정기업은 제출한 '수행계획서' 내용과 동일한 산출물 제작	서식 2
3	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활용 동의 및 신청 약약서(대표자)	서식 3
4	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활용 동의서(담당자)	서식 4
5	지원사업 성실참여 약약서	서식 5
6	중복지원금지 약약서	서식 6
7	사업자등록증 사본	-
8	상표등록증 또는 브랜드 독점 상표권, 유통권 보유 증빙자료 사본	-
9	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	-

10	최근 3년간(2020년 ~ 2022년) 재무제표 ※ ①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, ②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증명, ③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,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 택일	-
11	최근 3년간(2020년 ~ 2022년) 수출실적증명원 ※ ① 한국무역협회 작수출실적증명 ② UtradeHub(www.utradehub.or.kr) 간접수출증명 중 택일	-
12	제품 정보자료(고해상도 브로슈어 등) 또는 제품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정보	-

□ 선정안내

- 선정기준 : 평가표에 의한 평가위원회(서류평가) 진행 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선정
- 평가방법 : 외부 평가위원회(7명 이내) 구성 후 항목별 평가
- 평가항목 및 배점 : 총 100점(총 70점 이상 기업 선정 대상)  
· 평가항목

항 목	평가내용	배점
브랜드(디자인) 역량	1-1.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 여부, 타깃의 명확성 1-2. 제품 디자인 차별성 및 우수성 1-3.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업의 의지 및 노력	15
추진계획 구체성 및 기대효과	2-1. 지원사업 참여 배경(필요성) 및 의지 2-2. 지원사업 참여 및 수행 구체적 계획 여부 · 예상 산출물에 대한 구체적 전략 여부 · 예상 산출물 창의성 및 도전성 2-3. 지원사업 활용 역량(예상 산출물 구체적 활용 전략 등)	40
수출 역량	3-1. 수출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의지 여부 3-2. 수출 역량 · 해외 상표등록 및 해외 인증 여부 · 해외 바이어 대상 마케팅(홍보) 역량 · 그 외 해외시장 경쟁력 등	30
기업 역량	4-1. 구체적 · 체계적 수행계획서 작성 여부 4-2. 지원사업을 통한 신청기업의 역량 제고 가능성	15
<b>합 계</b>		100

□ 지원제외(유의사항)

-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,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
  - 1)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
  - 2) 기업의 부도 또는 휴폐업인 경우
  - 3)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조세채납처분이 있는 경우

- 4)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5)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6)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- 7)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’ 인 경우
- 8)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- 9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- 10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
- 11)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
- 12)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
- 13)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
- 14) 현행 법령위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, 소송,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참여기업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15) 진흥원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대상 기업인 경우
- 16) 그 외 개별 세부사업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

#### 4. 문의처

- 사업문의 : 053-350-7854(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전략연구팀 문소영 사원)
- 대표문의 : 053-350-7857(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전략연구팀 허욱 주임)
- 팩스번호 : 053-353-7812
-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, 진흥원 홈페이지([www.koia.or.kr](http://www.koia.or.kr)), 아이웨어포털([www.eyewearportal.or.kr](http://www.eyewearportal.or.kr))을 통해 확인